장안대학교 학칙

공포 제2025-10호(개정 2026. 1.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장안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원격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29.)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자아실현의 교훈아래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의 소양과 유능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교의 명칭은 '장안대학교'라 한다.(개정 2024.2.29.)

제4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460번지)에 둔다.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교에는 전문학사과정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두며, 학부,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15.)(개정 2024.5.17.)(개정 2025.4.29.)

제6조(계열구분) ① 대계열은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며, 포함되는 소계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1.)

1. 공학계열 : 공학 등
2. 자연과학계열 : 이학·농학·간호·보건 등
3. 인문사회계열 : 어학·문학·사회 등
4. 예·체능계열 :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제7조(계약에 의한 학과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과정(이하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4.2.29.)

제2장 직제

제8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는 총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전임교원을 둔다. (개정 2019.8.1.)

② 본교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행정직원과 조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임교원외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교수 등 비전임교원을 총장이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8.1.) (개정 2024.2.29.)

④ 비전임교원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4.2.29.)

제8조2(강사)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4조의2에서 적용한 관련 규정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8.1.]

제9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24. 12. 1.)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협력 활동을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중 일부의 업무만 전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24. 12. 1.).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0조(조직) ① 본교에는 행정부서로 기획처, 교무처, 입학처, 학생지원처, 산학협력처, 총무처,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각 부서에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시행 2020.1.21.)

② 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처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처의 사무분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1.6.)

④ 본교에는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과 학생의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 및 부설기관과 시설을 둘

수 있고, 그 장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산학협력단 설치) ① 본교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설기관으로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며, 하부조직으로 행정지원조직과 부속시설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하고, 운영을 위하여 대학의 교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 결정은 총장이 정한다.

③ 총장은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처 조직의 역할과 의무를 산학협력단에 병행시킬 수 있다.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12조(수업연한)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하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시행일 2026.3.1.)(개정 2024. 12. 1.)(개정 2026.1.6.)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의2에 의하여 졸업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업연한을 4분의 1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6.>

제13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장 학년도 · 학기 ·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4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학기) ① 학기는 2학기 이상으로 하고, 2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개정 2025.1.6.)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4.15.)
3. 외국인 학생 등 정원외 입학의 경우, 2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
4. 위 제1호,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주(14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및 개강일은 총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학기제, 계절학기제, 현장실습 계절학기제, 실습학기제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5.1.6.)

③ <삭제 2025.1.6.>

제1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 6월 15일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③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제19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 일로부터 4주(28일)이내로 한다.

제20조(입학자격) ①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외국인의 경우,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TOPIK 2급자격소지자 또는 국제교류원 자체시험 2급 통과자 등으로 정한다.(신설 2024.2.29.)

제21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6.1.6.)

제22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매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6.1.6.)

제23조(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 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는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24.5.17.)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식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2.29.)

제25조의1(정원외 전담학과 설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만 해당),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담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2.29.>(개정 2025.4.29.)
② 정원외 전담학과의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기 및 수업일수, 졸업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5.4.29.>

제25조의2(성인학습자의 학과 및 입학정원) 린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성인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하 “성인학습자 과정”이라 한다.)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성인학습자과정의 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인학습자과정 운영규정」에 따른다.<신설 2024.2.29.>(개정 2025.4.29.)

제26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이 취소(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신입생 모집요강 등에서 정한 입학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신설 2024.2.29.)

제6장 편입학 및 재입학

제27조(편입학) ① 총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2.29.)
② 편입학 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개정 2024. 9. 3.)
④ 외국인 유학생의 편입학을 허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5.17.)

제28조(전과) ① 교내 전과, 전공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학과에 관계없이 1학년 1학기, 2학기 개시일부터 4주 이내와 2학년 1학기 개시일부터 4주 이내에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5.17.),(개정 2025.6.20.)
②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로의 전과는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개정 2024.5.17.),(개정 2025.2.17.)
③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졸업요건에 필요한 전공과목의 50%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출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2.29.)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과는 불허한다.
1. <삭 제 2023.5.30.>
2. <삭 제 2023.5.30.>
3. 산업체위탁교육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로 입학한 사람의 전과 (개정 2025.2.17.)
4. 야간에서 주간학과로의 전과

5.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3항 2호에 해당하는 학과로의 전과 (시행일 2026.3.1.)[신설 2024. 12. 1.]

⑤ 전과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현 소속 학과장의 확인과 전입 희망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단, 폐과로 인하여 전과가 필요한 재학생에 한하여 제한 없이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3.5.30.)

제28조의2(자유전공 전공배정) ①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하는 학생의 전공배정은 1학년 1학기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6.]

제29조(재입학) ① 본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소속 학과가 폐과되었을 경우 희망학과로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2.29.)

④ 2년제 학과로 입학한 자가 재입학 시 소속학과가 3년제 학과로 전환되었을 경우 학생의 의사에 따라 3년제 학과로 재입학 할 수 있고, 3년제 학과로 입학한 자가 재입학 시 2년제 학과로 전환되었을 경우, 학생의 의사에 따라 2년제 학과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단, 3년제 학과 운영이 종료된 후의 재입학자는 2년제 학과로 재입학한다. [신설 2024. 12. 1.], (개정 2025.2.17.)

제7장 휴학 · 복학 · 자퇴 및 제적

제30조(휴학) ①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일반휴학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창업,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으로 분류한다.

1. 군휴학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명령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창업, 임신·출산·육아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병 · 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 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반 휴학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1학기 이상 정규 창업교육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⑥ 창업,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회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휴학자는 학적을 보유하며 학기개시일 이전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제31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휴학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은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기 개시 3주 이후에 제대하는 군휴학자의 경우 학점 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용증, 휴가증 등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2년제 학과로 입학한 자가 복학 시 소속학과가 3년제 학과로 전환되었을 경우 학생의 의사에 따라 3년 과정을 수학할 수 있고, 3년제로 입학한 자가 복학 시 2년제 학과로 전환되었을 경우, 학생의 의사에 따라 2년제로 졸업할 수 있다. 단, 3년제 학과 운영이 종료된 후의 복학자는 2년제로 졸업한다. (개정 2024. 12. 1.)

⑥ 휴학자는 입학정원의 결원에 관계없이 복학예정일에 복학할 수 있다.

⑦ 복학 또는 재입학 시 기존 학과가 명칭 변경 또는 통 · 폐합되었을 경우, 명칭 변경 또는 통 · 폐합된 학과로 소속이 변경된다.[신설 2024. 12. 1.]

제32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33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제적처분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3주가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한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산업체위탁교육생 중 위탁계약을 해지한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장 교과 및 이수

제34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한다. 다만 전공교과의 경우 학과의 특성에 따라 일반선택교과(10% 범위 안)와, 교직교과로 운영할 수 있고, 간호학과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시행일 2026.3.1.)(개정 2024. 12. 1.)

② 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각 과별, 전공별 교육과정은 해당학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장이 정한다.

③ 현장실습 의무대상과의 산업체 현장실습은 전공교과의 필수로 한다.

④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변경 할 수 있다.

⑤ 복학 및 학적이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⑥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⑦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⑧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정원 외 전담학과의 교육과정은 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하며, 산업체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다.<신설 2025.4.29.>

제34조의1(융합교육과정운영) ① 대학 내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융합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2.29.>

제34조의2 <삭제 2026.1.6.>

제35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수학점의 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30.)(시행일 2026.3.1.)(개정 2024. 12. 1.)(개정 2026.1.6.)
1. 최소 이수학점 예외: 미취득 교과로 인한 졸업불가자, 간호학과 또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등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26.1.6.>
2. 최대 이수학점 예외: 마이크로디그리 또는 이와 유사한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한하여 2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26.1.6.>

③ 계절학기는 동계·하계 방학 중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하로 한다.

④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취득에 관하여는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1.4.28.>

제36조(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관련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6.1.6.)

② 학교·연구기관·산업체·외부 협약기관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실습·자격취득·근무경험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관련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본교 운영기관 및 외부 협약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인정 범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3.)(개정 2025.6.20.)(개정 2026.1.6.)

③ 국내·외 학교, 산업체 등에서 행한 현장실습, 창업현장실습 및 국내·외 인턴십, 글로벌현장학습 등은 22학점 범위 안에서 관련 전공교과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④ 창업준비 활동으로 창업실습 교과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창업 동아리활동은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한 학기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창업실습 교양교과 학점으로 인정하되 P와 F로 부여한다.

⑤ 창업학점 교류를 협정을 맺은 타 대학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창업강좌로 지정된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일

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2회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한다. 이때, 1회에 취득한 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라도 인정횟수를 1회로 계산한다.(개정 2026.1.6.)
1. <삭제 2026.1.6.>
2. <삭제 2026.1.6.>
⑦ 재입학생은 허가된 학기의 이전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⑧ 조기취업 학생은 학교가 정한 취업 요건을 갖추었을 시 학점을 인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⑨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⑩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은 각 항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 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4. 9. 3.>(개정 2026.1.6.)

제37조(온라인교육프로그램) ① 본교에 개설된 온라인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의거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온라인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교직과정) ① 실기교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교과목을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해당 학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한다.
③ 실기교사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복수전공 등) ① 학생은 학부 또는 학과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학과(전공)가 제공하는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개정 2026.1.6.)
2.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학과(전공)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전공 또는 소단위 전공(개정 2026.1.6.)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신설 2026.1.6.>
4. 대학이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신설 2026.1.6.>
② 총장은 복수전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40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전일제수업, 주말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 교육방식을 도입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2.29.)(개정 2024. 12. 1.)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③ 수업시간표는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며, 주·야간 수업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업은 08:00부터 23: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야간수업은 산업체 근무자가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⑤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지원규정에 따른다

제40조1(성인학습자 과정 수업) ① 학칙 제61조의4(성인학습자교육과정)의 학생들도 학칙 제40조(수업)의 내용에 따른다.(신설 2024.2.29.)

제41조(집중수업) 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수업 및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계절학기, 실습학기의 강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하되, 외국인강의전담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비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2.29.)(개정 2024.5.17.)

제4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범위는 15학점 이상 22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30.)
③ 상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35조제2항에 의거하여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26.1.6.)
④ 이미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수강할 수 있

다.
⑤ 재수강 신청과목에 대한 성적은 B+등급까지 인정한다.
⑥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게는 우선 수강신청을 허가하고 수업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⑦ 기타 장애학생의 수강신청 및 학습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2.29.)
⑧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에 의하여 재적생 중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졸업을 못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유사학과(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24.5.17.)
⑨ 학급규모의 수강인원 기준에 미달이 되는 교과목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타 학과의 유사 교과목을 대체 수강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급규모의 수강인원의 기준은 수업운영 규정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4.5.17.)

제44조(출석의무) ① 학생은 수강신청 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과목당 결석일수가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제45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 4분의 3이 경과한 이후 휴학한 군입대자의 잔여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조기취업 학생은 특례적으로 취업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6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시험, 추가시험 등을 행할 수 있다. 또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교과목은 담당교수가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등의 형태로 시행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수업 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제47조(추가시험) ①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하여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 성적은 B^+ 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평소학업성적·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성 적	평 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59 이하	0
P		불계

② 교과목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경우 P를 급제로 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고 평균평점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⑤ 성적은 학업성적처리규정 및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총장이 인정한다.(개정 2024.5.17.)

제49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미 인정된 것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승인된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개정 2024.2.29.) (개정 2026.1.6.)
3.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제50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졸업)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학과 72학점, 3년제 학과 108학점, 4년제 학과는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3.1.)(개정 2024. 12. 1.)

③ 각 학년제별 졸업학점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간호학과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시행일 2026.3.1.)(개정 2024. 12. 1.)

④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3항 및 제5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12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의 경우 위 각 항과 외국인유학생 입학지도관리 규정에 따른 언어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24.12.1.)(개정 2025.2.17.)

제51조의1(학위취득유예)(신설 2024.2.29.) ① 매 학기별 졸업사정대상자 중 학칙 제51조에서 정한 졸업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별 학사일정에서 정한 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에 소속 학과장 및 학부장의 허가를 받아 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학사과정 학위취득 유예 신청 학기는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마지막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③ 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학위취득 유예 해당 학기별 등록기간에 별도의 졸업유예 비용으로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기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④ 학위취득 유예 신청한 사항은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⑤ 학위취득 유예 비용은 매 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2조(후기졸업)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졸업학점 미달자
2.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9월학기 입학생 (신설 2024. 9. 3.)

② 후기 졸업연도는 전기 졸업연도와 같다.

제53조(졸업인정과 학위수여) ① 본교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서식 제1호]의 학위증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사학위 종별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1.2.5.)

② 1997학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서식 제2호]의 학위증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51조의 ④에 의거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는 [서식 제4호]의 학위증에 의하여 [별표 3]의 학사학위 종별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1.2.5.)

제54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서식 제3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36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2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08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30학점 이상 (시행일 2026.3.1.)[신설 2024. 12. 1.]

제10장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제55조(직업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계고등학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 · 폴리텍대학 ·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계교육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1.6.)

제56조(공개강좌) ① 본교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출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점과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의뢰 받아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계약에는 위탁교육생 선발기준, 위탁교육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6.20.)
③ 산업체위탁생의 모집계획 및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58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1년 또는 2년 연한의 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 취득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2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③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표 3]의 학사학위 종별에 의하여 [서식 제4호]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 탈락한 자는 [서식 제3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28.)
④ 전공심화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전공심화과정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을 둔다.
⑥ 외국인 입학생의 경우, 전공심화학사과정은 2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신설 2024.5.17.)
⑦ 동일계열과 재직 경력의 관련 분야, 관련 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4.12.1.)

제59조(시간제등록) ① 본교에서는 성인학습자에게 재교육·전직교육·전환교육·취업교육 및 그 밖에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시간제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③ 등록생은 장안대학교의 재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별도반)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는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수 없다.
④ 시간제등록생의 정원은 통합반과 별도반을 합하여 장안대학교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⑤ 통합반 시간제등록생은 재학생과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한다.
⑥ 별도반 등록생의 교육과정은 재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⑦ 시간제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시간제등록에 의하여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에 기초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장명의의 학위수여를 할 수 있다.
⑨그 밖의 시간제등록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학점은행제) ① 본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학점은행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본교에서 이수 가능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 : 105학점 이내
2.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과정 : 2년제 60학점, 3년제는 90학점 이내
③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에 기초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수여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교에서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교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1.6.)

제61조의2(원격평생교육) ① 본교에서는 원격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원격평생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제61조의3(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① 본교에서는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4.28.>

제61조의4(성인학습자교육과정)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성인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하 "성인학습자 과정" 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2.29.)

제61조의5(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2.29.)

제11장 학생활동

제62조(학생자치기구) ① 본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발전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장안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제적·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총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63조(학생회비) 총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4조(학생활동의 금지) ① 총학생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위법하게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시위·농성·등교거부·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5조(대표의 선출 및 임기) 총학생회의 구성은 학생회칙에 의한 방법으로 선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6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제규정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학생지도 및 인권침해 예방) ① 총장은 학과·학부별로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종 행사(O.T, M.T 등)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주관 책임자는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등의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과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 등은 반드시 사전점검 후 진행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등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에 필요한 응급처치 요령 등과 구급에 필요한 비상약품 등을 지원 받도록 한다.

③ 교내 각종 학생 자치행사(축제, 체육대회 등) 및 교외 단체 활동(M.T, 봉사활동, 산업체견학, 수련회 등) 진행시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5.4.29.)

④ 학생회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8조(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개최일시·장소·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포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5. 그 밖에 '학생생활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제69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처벌) ① 제64조, 제66조, 제68조 및 제69조를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단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 포함)는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제12장 규율 및 상벌

제7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72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73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1. 본교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 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자
3. 그 밖에 학생의 본분을 일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정한다.

③ 징계 대상자는 징계심의시 출석하여 진술, 소명 및 변론을 할 수 있다.

제74조(성희롱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본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장 등록금

제75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은 신용카드 등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4.2.29.)

② 실험실습비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수 할 수 있다.

제76조(등록금 면제) ①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7조(등록금 반환) ① 수업료·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해 부분에 따라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할 수 없거나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 학기 개시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나. 입학식(학기개시)후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2. 재학 중인 자가 법령에 의하여 자퇴하거나,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6.1.6.)
   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나. 학기 개시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 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다. 학기 개시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 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라. 학기 개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제14장 장학금

제78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거나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79조(교수회 구성) ① 본교에는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으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교수회를 대체하여, 보직처장, 보직과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0조(교수회 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장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29.)
② 교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한다.(개정 2024.2.29.)
1. 선출직 임원과 평의원의 선출
2. 대학평의회 평의원 선출
3.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교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1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교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제위원회) ① 본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 대학정보화위원회, 인사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재입학심사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28.)
②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대학평의원회

제82조의2(평의원회 구성) 본교에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의원회는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한다.

제82조의3(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의 소집은 총장이 요청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4.12.1.)

제82조의4(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82조의5(평의원회 운영)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학칙 개정 절차

제83조(학칙 개정의 예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4조(공고기간) 학칙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제85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심의) 사전 공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7조(공포) 총장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학칙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포한다.

제88조(시행일) 개정학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즉시 효력을 발한다.

제18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9조(부속기관) ① 본교 부속기관 설치에 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4.29.)(개정 2026.1.6.)
② <삭제 2025.4.29.>
③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0조(부설기관) ① 본교 부설기관 설치에 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4.29.)(개정 2026.1.6.)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장 학교기업

제91조 (학교기업 설치) ① 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장안대학교 학교기업'이라 한다.
② 학교기업은 장안대학교 교지(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 안에 둔다. 다만, 학교기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거나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지 밖(권역권내)의 부지 또는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관련학과는 장안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2조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93조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및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장 보칙

제94조(보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장 자체평가

제95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장 구조조정

제96조(구조조정) ①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조조정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4.2.29.)
②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2.29.)(개정 2026.1.6.)
③ 구조조정 대상 학과 및 행정부서 소속 교직원은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사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교육과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2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한다.
② 2002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교과목이 폐과목 되었거나 학기변동 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환경공학과, 의상디자인 계열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환경시스템과, 패션디자인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공학과, 의상디자인계열에서 취득한 학점은 환경시스템과, 패션디자인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조(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영과, 무역정보 계열, 세무회계과, 유통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경영정보계열의 해당 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경영과, 무역정보계열, 유통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정보계열의 경영정보전공, 유통정보전공에 한하여 해당 학년에 재학중인 것으로 본다.
③ 세무회계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 한 자는 경영정보계열 세무회계정보 전공의 해당 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④ 관광계열, 영어과, 일어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 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관광외국어계열의 해당 학년에 재학중인 것으로 본다.
⑤ 2002학년도에 관광계열에 입학하여 항공운항, 항공서비스전공으로 전공분류된 학생중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관광외국어계열에 해당 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⑥ 학과통합 및 전공폐지 따라 경영과, 무역정보계열, 세무회계과, 유통경영과, 관광계열, 영어과, 일어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경영정보계열, 관광외국어계열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1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2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또는 전공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되었던 다음의 종전 계열·전공학·과는 각각 현행 계열·전공·학과로 본다.

종 전		현 행	
산업디자인계열	산업디자인전공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캐릭터디자인전공		
컴퓨터응용계열	전자상거래전공(주)	컴퓨터정보계열	인터넷비즈니스전공
컴퓨터응용계열	네트워크전공(주)	컴퓨터정보계열	인터넷정보통신전공
컴퓨터응용계열	멀티미디어컨텐츠전공(주)	컴퓨터정보계열	멀티미디어컨텐츠전공
컴퓨터응용계열	컴퓨터게임전공(주)	컴퓨터정보계열	게임전공
컴퓨터응용계열	소프트웨어개발전공(주)	폐지	
컴퓨터응용계열	전자상거래전공(야)	컴퓨터정보계열	인터넷비즈니스전공(야)
컴퓨터응용계열	네트워크전공(야)	폐지	
컴퓨터응용계열	멀티미디어컨텐츠전공(야)	폐지	
환경시스템과		환경보건과	
경영계열	경영정보전공	비즈니스계열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전공
경영계열	유통정보전공	비즈니스계열	프랜차이즈비즈니스전공
경영계열	세무회계정보전공	세무회계과	
관광외국어계열	여행이벤트전공	관광외국어계열	관광레저경영전공
행정계열	일반행정전공	복지행정서비스계열	여성공무원양성전공
행정계열	법무행정전공	복지행정서비스계열	법무서비스전공
사회복지과		복지행정서비스계열	사회복지전공
금속공예디자인과		쥬얼리디자인과	
문예창작과		디지털스토리텔링과	
체육계열		생활체육계열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계열·전공·학과에 소속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현행 계열·전공·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3조(학과 또는 전공 폐지로 인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컴퓨터응용계열 소프트웨어개발전공 주간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컴퓨터정보계열의 인터넷비즈니스전공, 멀티미디어컨텐츠전공, 인터넷정보통신전공 또는 게임전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컴퓨터응용계열 네트워크전공 야간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학칙 제27조(전과) ④의 2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정보계열 인터넷비즈니스전공 야간이나 인터넷정보통신전공 주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컴퓨터응용계열 멀티미디어컨텐츠전공 야간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학칙 제27조(전과) ④의 2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정보계열 인터넷비즈니스전공 야간이나 멀티미디어컨텐츠전공 주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④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환경시스템과 야간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학칙 제27조(전과) ④의 2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보건과 주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⑤ 이 경우 복학 또는 재입학하기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복학 또는 재입학 전 교육과정에 의거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대체과목 이수 또는 개별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또는 전공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되었던 다음의 종전 계열(학과)·전공은 각각 현행 계열(학과)·전공으로 본다.

종 전		현 행	
비즈니스계열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전공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과	
관광·외국어계열	호텔조리전공	호텔관광계열	호텔조리전공
	외식산업전공		외식산업전공
	호텔조리전공(야)		호텔조리전공(야)
	외식산업전공(야)		전공폐지
	호텔경영전공		호텔경영전공
	관광레저경영전공		관광레저경영전공
	영어통역전공	관광외국어계열	관광영어통역전공
	일어통역전공		광광일어통역전공
	중국어통역전공		관광중국어통역전공
	일어통역전공(야)		전공폐지
복지행정서비스계열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행정계열	사회복지전공
	법무서비스전공		법무서비스전공
	여성공무원양성전공		공무원양성전공
	사회복지전공(야)		사회복지전공(야)
	법무서비스전공(야)		전공폐지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계열(학과)·전공에 소속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현행 계열(학과)·전공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3조(계열(학과·전공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컴퓨터응용계열 인터넷비즈니스전공 주간 또는 야간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컴퓨터정보계열 인터넷정보통신전공, 멀티미디어 컨텐츠전공, 게임전공 주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비즈니스계열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전공 주간 또는 야간에 재적 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과, 비즈니스계열 경영전공 주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비즈니스계열 프랜차이즈비즈니스전공, 비서전공 야간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비즈니스계열 프랜차이즈비즈니스전공, 비서전공 주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④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관광외국어계열 외식산업전공, 호텔경영전공, 관광레저경영전공 야간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호텔관광계열 외식산업전공, 호텔조리전공 주간, 호텔조리전공 야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⑤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관광외국어계열 일어통역전공 야간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관광외국어계열 영어통역전공, 일어통역전공, 중국어통역전공 주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⑥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복지행정서비스계열 법무서비스전공 야간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행정계열 공무원양성전공, 법률행정전공 주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⑦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야간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 시각디자인과 주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⑧ 이 경우 복학 또는 재입학하기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복학 또는 재입학 전 교육과정에 의거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대체과목 이수 또는 개별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또는 전공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되었던 다음의 종전 계열(학과)·전공은 각각 현행 계열(학과)·전공으로 본다.

종 전		현 행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과		엔터테인먼트과	
비즈니스계열	프랜차이즈비즈니스전공	비즈니스계열	유통/프랜차이즈전공
관광외국어계열	관광영어통역전공	관광외국어계열	영어통역전공

종 전	현 행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계열	광고디자인전공
		생활환경디자인전공
디지털스토리텔링과	디지털문예창작과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시각디자인과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시각디자인계열 광고디자인전공, 생활환경디자인전공 주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또는 전공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되었던 다음의 종전 계열(학과)·전공은 각각 현행 계열(학과)·전공으로 본다.

종 전		현 행	
비즈니스계열	경영전공	유통물류계열	전공폐지
			국제물류전공(신설)
	유통/프랜차이즈전공		유통경영전공(전공분할)
			프랜차이즈전공(전공분할)
	비서전공		전공폐지
사회복지행정계열	공무원양성전공	사회복지행정계열	법률/행정전공
	법률행정전공		
패션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계열	패션디자인전공
			스타일리스트전공(전공신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계열(학과)·전공에 소속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현행 계열(학과)·전공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3조(계열(학과)·전공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비즈니스계열 경영전공, 유통/프랜차이즈전공, 비서전공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유통물류계열 유통경영전공, 프랜차이즈전공, 국제물류전공 주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사회복지행정계열 공무원양성전공, 법률행정전공 주간에 재적 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행정계열 법률/행정전공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야 한다.

③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패션디자인과 주간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패션디자인계열 패션디자인전공 또는 스타일리스트전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④ 이 경우 복학 또는 재입학하기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복학 또는 재입학 전 교육과정에 의거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대체과목 이수 또는 개별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또는 전공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되었던 다음의 종전 계열·전공·학과는 학부제 시행으로 인한 전공명을 학과명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유통물류계열 국제물류전공, 프랜차이즈전공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유통물류학부 물류경영과, 프랜차이즈경영과로 각각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③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사회복지행정계열 법률/행정전공에 재적한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사회과학부 행정법률과로 복학 및 재입학할 수 있다.

④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계열·전공·학과에 소속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학부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3조(전공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시각디자인계열 광고디자인전공, 생활환경디자인전공에 재적한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디자인학부 비주얼디자인과로 복학 및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생활체육계열 태권도전공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로 복학 및 재입학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복학 또는 재입학하기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복학 또는 재입학 전 교육과정에 의거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대체과목 이수 또는 개별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되었던 종전 학과는 학과명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학과명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재적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항공운항과는 항공관광과로, 영어통역과는 영어과로, 관광일어통역과는 관광일어과로, 관광중국어통역과는 관광중국어과로, 게임과는 컴퓨터게임과로 각각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제3조(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디자인학부 쥬얼리디자인과(야)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디자인학부 쥬얼리디자인과(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제4조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과에 소속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부/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되었던 종전 학과는 학과명 변경으로 인하여 제2항의 학과명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휴학 또는 제적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비주얼디자인과는 시각디자인과로, 엔터테인먼트과는 연기영상과로 각각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제3조(학점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부/학과에 소속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부/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부칙

이 학칙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2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으며, 복학 또는 재입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조(학과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되었던 종전학과는 학과명 변경으로 인하여 제2항의 학과명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휴학 또는 제적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영어과는 비즈니스영어과로 각각 복학 또는 재입학 할 수 있다.

제4조(학점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부/학과에 소속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부/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부칙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예술학부 연기영상과의 재적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 학위수여 시까지 15학점 이하의 졸업학점미달로 인한 졸업유보생은 유아교육과를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다른 학과로 소속하여 연기영상과의 학업을 마칠 수 있고, 수강교과목은 대체수강 혹은 개별수강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는 연기영상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그 관련업무는 소속 학과에서 수행한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유아교육과를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학부/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은 전부 전입한 학부/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포기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재학생중 2014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는 2015학년도 1학기 개시전 총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한하여 성적포기를 허용한다.

제3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되었던 다음의 종전 학과는 각각 현행 학과로 본다.

종 전	현 행
관광중국어과	관광비즈니스중국어과
컴퓨터게임과	게임컨텐츠과(3년제)
뷰티디자인과	뷰티케어과
디지털문예창작과	미디어스토리텔링과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과에 소속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현행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③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2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으며, 복학 또는 재입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과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한 신입생은 본인이 원하는 다른 학과로 전과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다. 단, 전과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 또는 전과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기영상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칙 제28조(전과)에도 불구하고, 연기연상과 폐과로 인하여 전과한 재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기영상과로 전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은 전부 인정한다.
② 연기영상과 폐과로 인하여 전과 후 휴학한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기영상과로 전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은 전부 인정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되었던 다음의 종전 학과는 각각 현행 학과로 본다.

종 전	현 행
비즈니스영어과	관광비즈니스영어과
관광일어과	관광비즈니스일어과
연기영상과	-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과에 소속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현행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3조(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7학년도에 폐지되는 연기영상과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못하는 졸업유보생의 경우 유아교육과를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다른 학과로 전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취득한 학점은 전부 인정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7학년도에 폐지되는 호텔관광학부 호텔조리과(야간)의 재적생 또는 제적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 호텔관광학부 호텔조리과 주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과에 소속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현행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9학년도에 폐지되는 유통물류학부 세무회계과 야간의 재적 또는 제적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유통물류학부 세무회계과 주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과에 소속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현행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20학년도에 폐지되는 사회과학부 사회복지과, 건강과학부 식품영양과 야간의 재적 또는 제적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사회과학부 사회복지과, 건강과학부 식품영양과 주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과에 소속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현행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월 21일 정관개정일로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되었던 다음의 종전 학과는 각각 변경 학과로 본다.

종전	변경
관광비즈니스일어과	관광비즈니스일본어과
식품영양과	식품영양학과
인터넷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융합과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과에 소속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변경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1학년도에 폐지되는 학과 중 물류경영과, 서비스경영과의 휴학생이 복학 할 경우 물류무역과, 고객서비스과에 복학 할 수 있고, 행정법률과의 휴학생이 복학 할 경우 행정실무서비스과, 경찰법률서비스과 중 선택하여 복학 할 수 있다. 항공관광과 야간의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항공관광과 주간으로 복학 할 수 있다.
②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이 202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취득학점은 변경된 학과의 학점으로 전부 인정한다.
③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폐과에 소속된 학생이 복학이 불가한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유사한 타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되었던 다음의 종전 학부(학과)는 각각 변경 학부(학과)로 본다.

종 전		변 경	
유통물류학부	유통경영과	지식융합경영학부	유통경영과
	프랜차이즈경영과		프랜차이즈경영과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
호텔관광학부	외식산업과	호텔관광학부	외식비즈니스과
외국어학부	관광비즈니스영어과	글로벌외국어학부	글로벌비즈니스영어과
	관광비즈니스일본어과		디지털비즈니스일본어과
	관광비즈니스중국어과		디지털비즈니스중국어과
디자인학부	쥬얼리디자인과	디자인학부	디지털공예디자인과
건강과학부	환경보건과 (3년제)	건강과학부	바이오보건환경과 (3년제)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과에 소속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변경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2학년도에 폐지되는 학과 중 물류무역과, 고객서비스과에 재적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희망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과 동시에 전과를 허용할 수 있으며,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이 경우 기취득한 학점은 전과한 과의 학점으로 전부 인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업연한이 2년인 경우 2025학년도, 수업연한이 1년인 경우 202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5조(교과이수단위)②항, 제36조(학점인정)③항, 제43조(수강신청)②항의 22학점은 2023학년도 졸업대상자, 2024학년도 졸업대상자 중 수업연한 3년제 (학)과 3학년의 경우 24학점 범위 까지 인정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에 의하여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졸업을 못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유사학과(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소속 학과 또는 전공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되었던 다음의 종전 학과는 각각 현행 학과로 본다

종 전		변 경	
글로벌 외국어학부	디지털비즈니스일본어과	사회과학부	일본어콘텐츠과
디자인학부	스타일리스트과	예술학부	K-스타일리스트과
	디지털공예디자인과	디자인학부	주얼리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시각·캐릭터디자인과
건강과학부	바이오동물보호과	건강과학부	바이오동물보건과
예술학부	실용음악과	예술학부	실용음악 K_POP과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과에 소속된 사람이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변경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4학년도에 폐지되는 학과 중 유통경영과, 프랜차이즈경영과, 온라인쇼핑과, 융복합패키징과, 스마트물류드론과, 마케팅미디어경영과, 금융재테크과, 플랫폼비즈니스과, 관광경영과, 글로벌비즈니스영어과, 디지털비즈니스중국어과, 행정실무서비스과, 경찰법률서비스과, 부사관과, 바이오보건환경과(3년제)에 재적중인 사람이 복학할 경우,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 할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할 수 있으며,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이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은 전과한 과의 학점으로 전부 인정한다.

제4조(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호텔조리과, 외식비즈니스과에 소속된 사람이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호텔조리베이커리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5조(사회과학부 경영계열, 자율학부 자율융합계열, 글로벌자율계열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과학부 경영계열은 유통경영전공, 글로벌물류전공, 온라인쇼핑전공, 마케팅미디어전공, 자율학부 자율융합계열은 경찰법률서비스전공, 공공행정전공, 금융재테크전공, 소방안전관리전공, 병원원무행정전공, 글로벌영어전공, 군사경호전공, 자율학부 글로벌자율계열은 창업프랜차이즈전공, 의료코디네이션전공, 관광레저전공으로 세분화되며 계열단위 모집 후 1학년 1학기는 계열로, 1학년 2학기부터 각 전공으로 세분화 되어 운영하며, 별도반 편성시 1학년 1학기부터 계열별 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회과학부 경영계열, 자율학부 자율융합계열, 자율학부 글로벌자율계열의 학위 종별 표기) 사회과학부 경영계열, 자율학부 자율융합계열, 자율학부 글로벌자율계열의 전문학사 학위의 종별은 계열의 세부전공을 모두 표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과로 인하여 복학, 재입학, 졸업탈락자 등이 학점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타 학과 수업을 이수한 경우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전과에 대한 경과규정) 제28조①항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1학년 1학기부터 전과를 허가 할 수 있다.

제4조(학점인정에 대한 경과규정) 제49조(성적의 취소)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졸업대상자 중 졸업유보학생 및 수업연한 3년제 (학)과 3학년의 경우에는 2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되었던 다음의 종전 학부(학과)는 각각 변경 학부(학과)로 본다.

종 전	변 경

학 부	학 과	학 부	학 과
호텔관광학부	호텔조리베이커리과	호텔관광학부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
예술학부	실용음악 K_POP과	예술디자인학부	실용음악과
	K-스타일리스트과		스타일리스트과
디자인학부	주얼리디자인과		패션주얼리디자인과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보건복지학부	생활스포츠과
	운동처방과		스포츠재활과
IT·컨텐츠학부	게임컨텐츠과(3년제)	IT·콘텐츠학부	게임콘텐츠과(3년제)
	멀티미디어컨텐츠과(3년제)		영상미디어콘텐츠과(3년제)
	소프트웨어융합과(3년제)		컴퓨터공학과(3년제)
디자인학부	시각캐릭터디자인과		시각콘텐츠과 시각디자인전공

②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과에 소속된 사람이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 기 취득한 학점은 변경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5학년도에 폐지되는 학과 중 경영계열, 자율융합계열, 글로벌자율계열에 재적 중인 사람이 복학할 경우,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 할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은 전과한 과의 학점으로 전부 인정한다.(개정 2025.4.29.)

제4조(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3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학 또는 재입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2항은 간호학과 입학정원 승인결과를 동조 제1항 별표 1에 반영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1조제6항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별표 1]의 입학정원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되었던 다음의 학부는 각각 현행 학부로 본다.

종전	현행
예술디자인학부	예술·콘텐츠 학부
	디자인학부
IT·콘텐츠학부	AI컴퓨팅학부
글로벌자율학부	자율학부

제3조(명칭변경, 통합 및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현행	비고
호텔경영과	호텔관광과 호텔경영전공	명칭변경
관광레저경영과	호텔관광과 관광레저경영전공	명칭변경
스타일리스트과	방송스타일리스트과	명칭변경
시각콘텐츠과 웹툰애니메이션전공	웹툰애니메이션과(3년제)	명칭변경, 편제변경
IT융합과	AI융합과	명칭변경
복지행정법률과 복지행정전공 복지행정법률과 경찰법률전공	경찰행정과	명칭변경, 통합
경영과 비즈니스창업전공	경영과 창업경영전공	명칭변경
글로벌경영과	경영과 글로벌경영전공	명칭변경

제4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6학년도에 폐지되는 학과 중 실용·스트릿댄스과, 시각콘텐츠과 시각디자인전공, 식품영양학과(3년제), 군사과에 재적 중인 사람이 복학할 경우,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 할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취득한 학점은 전과한 과의 학점으로 전부 인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 [별표 1](개정 2023.5.30.) (개정 2024.5.17.)(개정 2025.4.29.)

<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모집단위명			모집인원(주간)	모집유보	총 입학정원	모집단위명		모집인원(주간)	모집유보	총 입학정원
호텔관광학부	항공관광과		100		100	호텔관광학부	항공관광과	100		100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	30		30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	30		30
		카페베이커리전공	30		30		카페베이커리전공	30		30
	호텔경영과		60		60		호텔관광과 호텔경영전공	40		40
	관광레저경영과		60		60		관광레저경영전공	40		40
예술디자인학부	실용음악과		70		70	예술·콘텐츠학부	실용음악과	70		70
	실용·스트릿댄스과		30	10	40		방송스타일리스트과	30	10	40
	미디어스토리텔링과		30	10	40		뷰티케어과	50		50
	뷰티케어과	헤어전공	50		50		영상미디어콘텐츠과(3년제)	40	30	70
		코스메틱·스킨케어전공					웹툰애니메이션과(3년제)	40		40
		메이크업·네일아트전공					미디어스토리텔링과	30	10	40
	스타일리스트과		30	10	40		게임콘텐츠과(3년제)	40	30	70
	패션디자인과		40		40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과	40		40
	패션주얼리디자인과		30	10	40		패션주얼리디자인과	30	10	40
IT·콘텐츠학부	컴퓨터공학과(3년제)		30	30	60		반려동물산업디자인과	30		30
	게임콘텐츠과(3년제)		60	30	90	AI컴퓨팅학부	컴퓨터공학과(3년제)	40	30	70
	영상미디어콘텐츠과(3년제)		40	40	80		AI융합과	30	10	40
	시각콘텐츠과	시각디자인전공	30		30	보건복지학부	사회복지과	90		90
		웹툰애니메이션전공	30		30		상담재활복지과	40		40
보건복지학부	사회복지과		60		60		생활스포츠과	70		70
	상담재활복지과		40		40		생활스포츠(족구)과*	20		20
	생활스포츠과		70		70		스포츠재활과	30	10	40
	생활스포츠(족구)과*		20		20		바이오동물보건과	60		60
	스포츠재활과		30	10	40		응급구조학과(3년제)	30		30
	바이오동물보건과		60		60		푸드케어과*	30		30
	식품영양학과(3년제)		20	30	50	인문사회학부	경영과 온라인마케팅전공	20		20
	푸드케어과*		20		20		경영과 창업경영전공	20		20
인문사회학부	경영과	온라인마케팅전공	30		30		경영과 글로벌경영전공	20		20
		비즈니스창업전공	30		30		세무회계과	30	10	40
	글로벌경영과		40		40		경찰행정과	30	10	40
	복지행정법률과	복지행정전공	30		30		일본어콘텐츠과	40		40
		경찰법률전공	20	10	30		유아교육과(3년제)	40		40
	세무회계과		30	10	40	자율학부	자유전공	80	50	130
	일본어콘텐츠과		40		40		글로벌케어복지과	40	10	50
	유아교육과(3년제)		40		40		드론산업과*	20		20
	군사과		30	10	40		파크골프산업과*	30		30
글로벌자율학부	자유전공		30		30		K-Model과	-		-
	글로벌케어복지과		40		40	교양학부	교양과	-		-
	IT융합과		20	10	30	합계		1,450	220	1,670

주1) "*"는 성인학습자전담학과 (4개)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모집단위명		모집인원(주간)	모집유보	총 입학정원	모집단위명	모집인원(주간)	모집유보	총 입학정원
교양학부					주2) 모집유보 12개(학)과 220명 주3) K-Model과 : 정원외 전담학과(외국인유학생 대상)			
	교양과		-	-				
합계		1,450	220	1,670				

주1) “*” 는 성인학습자전담과

주2) 모집유보 13개 (학)과 220명

주3) 글로벌자율학부 “글로벌케어복지과, IT융합과는 외국어(영어 등)로 수업 운영

<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모집단위명		주간	계	모집단위명			모집인원(주간)	모집유보	총 입학정원
호텔관광학부	항공관광과	100	100	호텔관광학부	항공관광과		100		100
	호텔조리베이커리과	80	80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	30		30
	호텔경영과	50	50			카페베이커리전공	30		30
예술학부	실용음악 K_POP과	70	70		호텔경영과		60		60
	미디어스토리텔링과	40	40		관광레저경영과		60		60
	K-스타일리스트과	40	40	예술디자인학부	실용음악과		70		70
건강과학부	바이오동물보건과	60	60		실용·스트릿댄스과		30	10	40
	뷰티케어과	60	60		미디어스토리텔링과		30	10	40
	생활체육과	90	90		뷰티케어과	헤어전공	50		50
	식품영양학과(3년제)	40	40			코스메틱·스킨케어전공			
	운동처방과	40	40			메이크업·네일아트전공			
사회과학부	경영계열	80	80		스타일리스트과		30	10	40
	사회복지과(3년제)	50	50		패션디자인과		40		40
	세무회계과	50	50		패션주얼리디자인과		30	10	40
	유아교육과(3년제)	70	70	IT·콘텐츠학부	컴퓨터공학과(3년제)		30	30	60
	일본어콘텐츠과	40	40		게임콘텐츠과(3년제)		60	30	90
IT컨텐츠학부	게임컨텐츠과(3년제)	60	60		영상미디어콘텐츠과(3년제)		40	40	80
	멀티미디어컨텐츠과(3년제)	50	50		시각콘텐츠과	시각디자인전공	30		30
	소프트웨어융합과(3년제)	40	40			웹툰애니메이션전공	30		30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과	50	50	보건복지학부	사회복지과		60		60
	시각·캐릭터디자인과	40	40		상담재활복지과		40		40
	주얼리디자인과	40	40		생활스포츠과		70		70
자율학부	자율융합계열	260	260		생활스포츠(족구)과*		20		20
	글로벌자율계열	225	225		스포츠재활과		30	10	40
합계		1,725	1,725		바이오동물보건과		60		60
					식품영양학과(3년제)		20	30	50
					푸드케어과*		20		20
				인문사회학부	경영과	온라인마케팅전공	30		30
						비즈니스창업전공	30		30
					글로벌경영과		40		40
					복지행정법률	복지행정전공	30		30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모집단위명	주간	계	모집단위명			모집인원(주간)	모집유보	총 입학정원
				과	경찰법률전공	20	10	30
				세무회계과		30	10	40
				일본어콘텐츠과		40		40
				유아교육과(3년제)		40		40
				군사과		30	10	40
			글로벌자율학부	자유전공		30		30
				글로벌케어복지과		40		40
				IT융합과		20	10	30
			교양학부	교양과			-	-
			합계			1,450	220	1,670

주1) “*” 는 성인학습자전담과

주2) 모집유보 13개 (학)과 220명

주3) 글로벌자율학부 “글로벌케어복지과, IT융합과는 외국어(영어 등)로 수업 운영

[별표 2] (개정 2024. 3. 1.), (개정 2024. 12. 1.), (개정 2025.2.17.), (개정 2026.1.6.)

<2026학년도 학위의 종별>

구분	학 과		학 위 종 별	비 고
전문학사학위	항공관광과		항공관광전문학사	
	호텔 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	호텔외식조리학전문학사	
		카페베이커리전공	호텔외식조리학전문학사	
	호텔관광과	호텔경영전공	호텔경영전문학사	
		관광레저경영전공	관광레저경영전문학사	
	실용음악과		예술전문학사	
	방송스타일리스트과		스타일리스트전문학사	
	뷰티케어과		뷰티케어전문학사	
	영상미디어콘텐츠과(3년제)		영상미디어콘텐츠전문학사	
	웹툰애니메이션과(3년제)		웹툰애니메이션전문학사	
	미디어스토리텔링과		스토리텔링전문학사	
	게임콘텐츠과(3년제)		게임콘텐츠전문학사	
	패션디자인과		디자인전문학사	
	패션주얼리디자인과		디자인전문학사	
	반려동물산업디자인과		디자인전문학사	
	컴퓨터공학과(3년제)		컴퓨터공학전문학사	
	AI융합과		인공지능융합전공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상담재활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생활스포츠과		체육전문학사	
	생활스포츠(족구)과*		체육전문학사	
	스포츠재활과		스포츠재활전공전문학사	
	바이오동물보건과		바이오동물보건전문학사	
	응급구조학과(3년제)		보건전문학사	
	푸드케어과*		푸드케어전문학사	
	경영과	온라인마케팅전공	경영학전문학사	
		창업경영전공	경영학전문학사	
		글로벌경영전공	경영전문학사	
	세무회계과		세무회계전문학사	
	경찰행정과		경찰행정전문학사	
	일본어콘텐츠과		일본어콘텐츠전문학사	
	유아교육과(3년제)		유아교육전문학사	
	자유전공		자유전공전문학사	
	글로벌케어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드론산업과*		드론산업학전문학사	
	파크골프산업과*		파크골프산업전문학사	
	K-Model과		미디어연기전문학사	
	교양과		-	
학사학위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사	
	관광레저경영학과		관광레저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관광학사	
	일본어콘텐츠학과		일본어콘텐츠학사	
	유아교육학과(1년제)		문학사	
	생활스포츠학과		체육학사	
	항공관광학과		항공관광학사	
	스타일리스트학과		예술디자인학사	
	컴퓨터공학과(1년제)		컴퓨터공학사	

<2025학년도 학위의 종별>

구분	학 과		학 위 종 별	비고
전문학사 학위	항공관광과		항공관광전문학사	
	호텔조리 베이커리과	호텔조리전공	호텔외식조리학전문학사	
		카페베이커리전공	호텔외식조리학전문학사	
	호텔경영과		호텔경영전문학사	
	관광레저경영과		관광레저경영전문학사	
	실용음악과		예술전문학사	
	실용 · 스트릿댄스과		예술전문학사	
	미디어스토리텔링과		스토리텔링전문학사	
	뷰티케어과	헤어전공	뷰티케어전문학사	
		코스메틱 · 스킨케어전공		
		메이크업 · 네일아트전공		
	스타일리스트과		스타일리스트전문학사	
	패션디자인과		디자인전문학사	
	패션주얼리디자인과		디자인전문학사	
	컴퓨터공학과(3년제)		컴퓨터공학전문학사	
	게임콘텐츠과(3년제)		게임콘텐츠전문학사	
	영상미디어콘텐츠과(3년제)		영상미디어콘텐츠전문학사	
	시각 콘텐츠과	시각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문학사	
		웹툰애니메이션전공	웹툰애니메이션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상담재활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생활스포츠과		체육전문학사	
	생활스포츠(족구)과		체육전문학사	
	스포츠재활과		스포츠재활전문학사	
	바이오동물보건과		바이오동물보건전문학사	
	식품영양학과(3년제)		식품영양전문학사	
	푸드케어과		푸드케어전문학사	
	경영과	온라인마케팅전공	경영학전문학사	
		비즈니스창업전공	경영학전문학사	
	글로벌경영과		경영전문학사	
	복지행정 법률과	복지행정전공	복지행정전문학사	
		경찰법률전공	경찰법률전문학사	
	세무회계과		세무회계전문학사	
	일본어콘텐츠과		일본어콘텐츠전문학사	
	유아교육과(3년제)		유아교육전문학사	
	군사과		군사전문학사	
	자유전공		-	
	글로벌케어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IT융합과		공학전문학사	
학사학위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사	
	관광레저경영학과		관광레저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관광학사	
	일본어콘텐츠학과		일본어콘텐츠학사	
	유아교육학과		문학사	
	생활스포츠학과		체육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2024학년도 학위의 종별>

구분	학 과		학 위 종 별	비고
전문학사학위	항공관광과		항공관광전문학사	
	호텔조리베이커리과		호텔베이커리전문학사	
	호텔경영과		호텔경영전문학사	
	실용음악K-POP과		예술전문학사	
	미디어스토리텔링과		스토리텔링전문학사	
	K-스타일리스트과		스타일리스트전문학사	
	바이오동물보건과		바이오동물보건전문학사	
	뷰티케어과		뷰티케어전문학사	
	생활체육과		체육전문학사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전문학사	
	운동처방과		운동처방전문학사	
	경영계열	유통경영전공	경영계열 유통경영전공전문학사	
		글로벌물류전공	경영계열 글로벌물류전공전문학사	
		온라인쇼핑전공	경영계열 온라인쇼핑전공전문학사	
		마케팅미디어전공	경영계열 마케팅미디어전공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세무회계과		세무회계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문학사	
	일본어콘텐츠과		일본어콘텐츠전문학사	
	게임컨텐츠과		게임컨텐츠전문학사	
	멀티미디어컨텐츠과		멀티미디어컨텐츠전문학사	
	소프트웨어융합과		소프트웨어개발전문학사	
	패션디자인과		디자인전문학사	
	시각·캐릭터디자인과		시각·캐릭터디자인전문학사	
	주얼리디자인과		디자인전문학사	
	자율융합계열	경찰법률서비스전공	자율융합계열 경찰법률서비스전공전문학사	
		공공행정전공	자율융합계열 공공행정전공전문학사	
		금융재테크전공	자율융합계열 금융재테크전공전문학사	
		소방안전관리전공	자율융합계열 소방안전관리전공전문학사	
		병원원무행정전공	자율융합계열 병원원무행정전공전문학사	
		글로벌영어전공	자율융합계열 글로벌영어전공전문학사	
		군사경호전공	자율융합계열 군사경호전공전문학사	
	글로벌자율계열	창업프랜차이즈전공	글로벌자율계열 창업프랜차이즈전공전문학사	
		의료코디네이션전공	글로벌자율계열 의료코디네이션전공전문학사	
		관광레저전공	글로벌자율계열 관광레저전공전문학사	
학사학위	경영계열		경영학사	
	글로벌자율계열		창업의료관광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관광학사	
	일본어콘텐츠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서식 제1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교 ○○과(○○ 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 ○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장안대학교 총장 (학위) ○ ○ ○

교육부학위등록번호 : 장안-

[서식 제2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본교 ○ ○과(○ ○ 전공)**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 ○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장안대학교 총장 (학위) ○ ○ ○

교육부학위등록번호 : 장안-

[서식 제3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교 학과(○ ○ 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장안대학교 총장 (학위) ○ ○ ○

[서식 제4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교 ○ ○ ○ **학과(○ ○ 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 ○ ○ 학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장안대학교 총장 (학위) ○ ○ ○

교육부학위등록번호 : 장안(학)-

[서식 제5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전 공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0조의1 규정에 의하여 ○ ○ ○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장안대학교 총장 (학위) ○ ○ ○

교육부학위등록번호 : 장안(학점)-